「2025년 제1차 One-Stop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특례시와 함께 화성지역 소공인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제품개발 및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『One-Stop 지원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0일

화성상공회의소

<u>1</u> 사업개요	
□ 사 업 명 : One-Stop 지원 사업	
□ 사업목적 : 제품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통해 사업 기반 확. 및 제품 경쟁력 강화	보
□ 사업개요	

- **(지원규모)** 5개사 내외
- **(모집기간)** 2025. 03. 10(월) ~ 03. 31(화) 18:00까지
- (신청방법) 팩스 및 이메일 접수, 방문접수
- (지원대상) 화성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『C22, C24~C31』9개 업종 소공인 업체
 - **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 (C27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

- (지원금액) 업체별 최대 1,000만원 지원 (부가세 제외)※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임.
- (지원내용)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 등 지원
 ※ 본 사업은 화성특례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.

<지원 주요 내용>

지 원 항 목	주 요 내 용		
디자인 및 설계비용	시제품 개발시 외주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		
원자재 구입비용	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		
위탁ㆍ외주 가공비용	시제품 개발시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수행하는 실제 경비		
금형 제작비용	시제품 개발시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(목업, 금형제작) 등		
시험·분석, 장비임대비용 시제품 개발시 시험·분석 지원 및 장비임대 비용 등			
기타비용	위의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 복합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		

2 모집안내

- □ 모집개요
 - (공고기간) 2025. 03. 10.(월) ~ 03. 31.(월) 18:00시 까지
 - (신청방법) 팩스 및 이메일, 방문 접수 가능
 -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
 - * 이메일 주소 : hssmcenter@gmail.com
 - * 팩스: 031-296-7909
 - * 방문접수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

3 지원절차

<u> </u>					
단계	주요 내용	준비사항 및 관련서류			
① 신청 접수 (소공인 → 센터)	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	■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성실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7 One-Stop 개발 계획서 1부 8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9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10 기타 가점사항 증빙서류 각1부 1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			
+		_ 니저터가이이십 그녀 나저면가 한 한 편기			
② 선정평가 (소공인 → 평가위원회)	서류평가 및 발표평가(업체당 15분)	 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■ 서류평가 – 시제품 개발 계획서등 신청내용 평가 ■ 발표평가 – 업체당 15분 PT발표(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) ■ 결과통보 – 개별 통보 			
+					
③ 협약 (센터 ↔ 소공인)	협약 진행 및 공급업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	 ● 선정 업체는 협약서(센터양식)를 작성하여 센터와 협약 체결 진행 ● 공급업체로부터 청렴 이행서약서(제8호 서식)를 받아 센터에 제출 			
+					
④ 중간정검(센터 → 소공인)	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	■ 현시점까지의 시제품 제작 과정 점검 및 사진등 서류 제출 요청			
1					
⑤ 제품개발 완료 (소공인)	시제품 결과물 도출 완료	■ 협약서에 제시한 사업기간 이내 시제품 개발 완료하여 결과물 제작 완료			
+					
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(소공인 → 센터)	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	■ 사업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			
.					
⑦ 지원금 정산 (센터 → 공급업체)	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	■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원금 입금			

〈서류발급처〉

-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www.sminfo.mss.go.kr)
- 국세 납부증명서 : 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- 지방세 납부증명서 : 정부24 홈페이지 (www.gov.kr)

※세부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4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

□ 선정방법

- (선정방법)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
- 서류평가: One-Stop 개발의 사업계획, 기술역량 등
- 발표평가: 개발업체 현황, 추진과제의 타당성, 기대효과 등 업체당 15분 발표
- (선정기준)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함
- 1순위: 추진과제의 타당성 고득점 업체,

소공인복합지원센터 보유 장비 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

- 2순위: 기대효과의 고득점 업체
- (선정통보) 선정업체 개별통보

5 유의사항

□ 지원선정 취소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선정통보일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- ㅇ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사전 변경 승인없이 외주 업체 및 과제 주요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지정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

- 신청기업체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,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관련법률 위반, 과제 부실 등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판단에
 의거 지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두절, 사업 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

□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, 외주 업체 변경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
- 사전 센터와 협의 없이 지원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 및 향후2년간 센터 지원사업 제약이 따름

□ 공급업체(제작업체) 선택시 유의사항

- 공급업체는 해당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복수 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
- 신청서 견적 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
- 공급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한함
-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조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
- 납품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 간 해결해야 함
- ㅇ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시켜야함

□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

○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<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필수 기재 사항>

구분	필수항목	필수 기재 확인 사항	
1	견적일자	사업 모집 기간 이내 必	
2	공급받는 자	사업 신청 업체명 필수 기재	
3	공급업체	직인날인, 업체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기재 必	
4	견적내용	품목, 규격 및 사양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부가세 필수 기재	
w 이 권기가서 미크리기가 무시된 보다 그런 데 가장이 되시되지 되면 네트리 라트린 침에고 제출			

※ 원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에 동일한 품목, 규격 및 사양을 기입하여 가격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

6 사업 수행

- □ 제출한 개발 계획서 및 견적서 기준으로 사업 진행
 - 사업수행기간 : 선정통보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마감 5일전까지

7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

- □ 지원금 신청 제출 기한 : 2025. 06. 12.(목) 18:00까지
 - * 기한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1. 지원금 지급신청서	(제9호 서식)
	2. 완료 보고서 (*제작 과정 사진 첨부 必)	(제10호 서식)
	3.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	(제11호 서식)
	4. 제작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	
	5.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	
	6.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	
	7. 공급업체 통장 사본 각 1부	
	8. 자부담 입금 확인증 각 1부	(부가세 + 지원금초과금액)
	9. 제출서류 체크리스트	

- □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
 - 시제품 제작 완료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
 -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등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출시 지원급 지급 불가
 - <u>제작과정 사진 미첨부시 지급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작과정 사진</u> 확보에 유의
 - 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
- □ 제작비용 자부담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 -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
 - 자부담 입금시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의 통장에서 상대업체 대표자(또는 법인) 계좌이체만 인정
 - 자부담액 입금 증빙은 송금확인증 등으로 입금받는자(공급업체)의
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
 -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 - 지원금 지급 방식: 센터에서 공급업체에 지급 (*<u>사전에 지원금</u> 지급기한에 대해 반드시 협의 되어야 함)

8 제재 조치 사항

- □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화성 상공회의소의 [기업지원사업 운영 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 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향후 지원배제 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2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• 위법 및 부당한 행위 예시

-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공급업체 대납, 신청업체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조, 선정 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9 자주묻는 질문

- O. 제작업체는 반드시 화성시 관내 업체여야만 하나요?
 - ⇒ 본 지원사업은 화성특례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.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, 관내경제 유동성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자 하오니 관내 공급 업체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.
- O. 중간에 내용 변경 및 공급업체 변경 가능할까요?
 - ⇒ 제출하신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및 공급업체 변경 발생시 반드시 사전에 센터 승인을 득한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 단, 사업 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Q. 센터 보유 장비를 꼭 활용해야 하나요?
 - ⇒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는 20점의 장비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 별첨의 보유장비 목록을 확인하시어 센터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Q. 사업 수행 사진 첨부는 필수인가요?
 - ⇒ [제10호 서식] 2025년 One-Stop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내 필수 자료로, 사진이 첨부 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진행 단계 전, 진행과정, 진행후 사진을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항목에 따른 사진 첨부 必. 원자재 입고, 가공, 가공후 사진 등)
- O. 지원금입금은 언제되나요?
 - ⇒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마감후 영업일 기준 약 20일 이내 공급업체로 입금처리됩니다.

10 문의처

□ 담당자 : 박지수 매니저 ☎ 070-7748-1502 (hssmcenter@gmail.com)